

[일련번호 : 65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수의계약 시 예산절감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과는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·용역 및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입찰 및 계약 등 세출예산 집행 추진계획」(재무과-1176, 2012. 1. 27.)에 의하면 일상경비 집행권한의 위임 확대에 따라 사업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발주 부서에서 직접 집행 시에는 수의계약 시담시 방침으로 정해진 기초금액별 사정률에 의거 계약금액을 결정한 후 지출품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, 「양천구 계약업무 개선 방안」(재무과-7415호, 2013. 4. 16.)에 따르면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시 견적가격 기초금액별로 사정률을 강화하여 통상 사정률은 하한율로 적용하고 견적 가격이 평균시장가격보다 높을 때 상한선을 적용하며, 수의계약 시담시 기초금액에 대해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은 5~6%의 표준 사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.

아울러, 「양천구 수의계약 수의시담(사정률) 개선 계획」(재무과-7738호, 2024. 3. 28.)에 의거 계약심사 이행 시 심사평가액으로 결정하며, 계약심사 미이행 시 용역, 물품 5%로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과는 5백만원 미만의 물품 수의계약 2건을 체결하면서, 수의계약 시담 과정에서 기초금액에 대한 표준 사정률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[표] 수의계약 시담 시 표준 사정률 적용 미준수 내역

연번	계약일자	건명	금액(원)	지적사항
1	20231228	빗물펌프장 안전·보건 점검 개선 소모품비 지급 (논슬립테이프,스펀지,안전모거치대 등)	1,580,700	표준 사정률 미적용 (5~6%)
2	20230414	하수기동반 소모성 물품 구매 비용 지출	2,979,790	표준 사정률 미적용 (5~6%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수의계약 시 예산절감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